

第23回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2月5日(金) 15時11分

##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 1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 4面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 9面

(15時11分 開議)

○議長 李斗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第55條 規定에 의하여 在籍議員 22名 중 出席議員 17名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3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 開議를 宣布합니다.

市民行政委員會에서 審査한 안건을 일괄 上程하여 審査報告를 듣고 안전별로 審議하고자 합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5時12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市民行政委員長이신 金成贊 委員長께서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金成贊 市民行政委員會委員長 金成贊입니다.

지난 1993年 1月 25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年 1月 26日 議長으로부터 本 委員會에 회부된 “서울特別市鍾路區

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3年 2月 1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年 2月 2日 本 委員會에 회부된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本 條例(案)은 地方公務員手當規定 第14條 별표9 第2號의 규정에 의하여 醫療法 第22條 第2項의 醫療行爲를 하는 公務員에게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소지 자격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케 함으로써 醫療業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市民保健을 위한 醫療業務遂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市長이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改正하려는 것으로서 原案 可決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地方公務員任用令의 개정으로 인한 직급 명칭의 變更으로 인하여 직급 명칭이 바뀌게 된 保健所長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원안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市民行政委員會 所管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  
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3. 2.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3년 1월 26일
- 다. 상정일자: 제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3.2.4):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주화중)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 체계 및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행 지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 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체계를 자격증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사공 곤)

○현행 의료직 공무원으로 종로구 보건소

에 근무하는 의사(소장)와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수당지급 체계 및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시민보건 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직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수당은 실질상 보수적 성격으로 서울특별시 각 구 체계가 통일을 기해야 하므로 준칙안으로 따라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단,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 요지)

(질의자: 정명호위원, 천상욱위원, 홍승태위원, 예상호위원)

○수당을 제외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의료수당 외는 없는지?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는가?

○보건소 보건직 공무원은 몇명이 있는가?

○각구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는 보건소가 있는지, 그리고 보수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의를 확보할 방안은 없는가?

○전문의 보수는 어느 정도이면 보건소에 올 수 있는가?

○보건소 의료인에 대하여 수당 인상시 타 직종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은 없는가?

(답변자: 조철행 보건소장, 민재식 보건행정과장)

○4급(소장)은 80만원, 5급은 70만3,500원, 일반진료의사 가급은 89만3,000원이며 나급은 75만2,000원임.

○직책수당이 본봉의 40%, 근속수당 6만원, 가족수당이 있음.

○마취과 전문의 1명이 있음.

- 보건소내 보건직은 4명임.
- 가정의학전문의 5~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수관계만 정립되면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음.
- 전문의 보수는 일반병원의 70%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 됨.

5. 檢討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없음

(參 照)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3. 2.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3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3년 2월 2일
- 다. 상정일자: 제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3.2.4):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주화중)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같이 일원화되었으며,
-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도 임용령 개정 취지와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기술직 직급 명칭이 행정직과 일원화됨에 따른 직급 명칭 개정
  - 지방의무기정 ..... 지방의무서기관
  - 지방보건기정 ..... 지방보건서기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사공 곤)

- 본 개정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누구나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

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서

-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설치조례 제3조 중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기정에서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없음
5. 檢討 要旨: 없음
6. 修正案의 要旨: 없음
7. 審査結果: 원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 없음

○議長 李斗鶴 金成贊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一括 上程된 안건 중 먼저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質疑가 제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質疑가 없으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질의가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民行政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3.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鍾路區廳長 提出)

(15時19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孫光一 委員長께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委員長 孫光一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孫光一입니다.

지난 1992年 12月 9日 鍾路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年 12月 9日 本 委員會에 심사 회부된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992年 9月 2日 開會된 第19回 臨時會 第1次 委員會에서 심의 결과 상위법규인 都市計劃法 및 同法施行令의 규정에 묶이어 주민의 대표인 區議員의 참여가 1명밖에 참여할 수 없도록 規定되어 원안 부결하고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條例(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여 區廳의 建設局長을 제외시키고 구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都市計劃委員會는 鍾路區의 都市計劃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住民의 生活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委員會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규인 都市計劃法 및 同法施行令의 規定에 민간인 전문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 따라 區議員이 참여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都市計劃委員會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原案 可決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委員에서 제외된 建設局長에 대하여는 區廳의 實務局長임을 고려하여 委員會의 운영 과정에서 업서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에 대한 審査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審査報告書

1993. 2. 4.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2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제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1993.2.4): 상정·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도시정비국장 김흥기)

가. 제안이유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로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로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기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종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구성: 위원수-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위원-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소위원회: 5-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윤주채)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도시계획법 '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2.7.1. 법률 제13684호로 개정되어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동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제76조 제2항에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 동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근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개적 주민 참여 측면에서 본 위원회의 설치에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본 조례안은 1992년 9월 2일 제1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1992년 12월 5일자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전영태위원, 김현중위원, 현효선위원, 정창희위원, 이형술위원)

○본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의 대책은?

○위원 중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들의 수는?

○현재까지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운영 상태를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민간 전문가의 위촉시 종로를 잘 알고 종로를 이해하는 인사로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복안은?

○민간인 위촉직 위원들의 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자: 김홍기 도시정비국장)

○현재의 자문위원회는 자문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민간인 전문가 3분의 2를 제외하면 공무원과 구의원의 위원수는 5명이 되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도시정비국장을 제외하면 구의원은 2인만이 참여하게 됨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하겠음

○민간인 전문가의 위원 위촉시 인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민간인 위촉직의 위원수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없음

#### 5. 檢討 要旨

○찬성 토론: 이현구 위원

-당초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의원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처리하였으나

-이번의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반대토론: 없음

####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 7. 少數意見의 要旨: 해당 없음

#### 8. 其他 必要한 事項: 해당 없음

○議長 李斗鶴 孫光一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議員! 質疑하십시오.

○鄭命浩議員 안녕하십니까? 鄭命浩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은 그동안에 本 議會에 회부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深思熟考 끝에 재회부되어서 都市建設委員會의 충분한 檢討를 거쳐서 본회의에 上程된 줄로 압니다.

그동안에 都市建設委員會의 의사를 존중해서 모든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本 議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都市建設委員會에 참여하지 않은, 都市建設委員會에 소속되지 않음으로 해서 本 議員의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가지만 質疑하고자 합니다.

여기 專門委員 檢討報告 요지나 또 質疑 및 答辯 요지를 本 議員이 읽어 봤을 때 이러한 사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문겠습니다.

설명요지에 보면 가. 提案理由에 평소에 서울特別市都市計劃委員會의 條例에 의해서

運營되는 것은 폐지가 되고, 다음에 나 부분에 주요골자에 가서 기능부분에 鍾路區廳長이 입안한 都市計劃에 대한 자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都市計劃委員會가 자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내지는 區廳長이 내놓은 案件에 대하여 모든 都市計劃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인지 그 부분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의결권까지 갖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本 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特別市議會에도 서울시都市計劃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都市計劃委員會에서는 委員會에서 확정된 의결된 안건도 서울시議會에 심의 승인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이 都市計劃委員會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後者の 질의에 있어서도 묻는 이유가 우리 鍾路區 都市計劃 基本計劃에 2억이라는 설계용역비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이 종로에 대한 都市計劃을 수립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우리 議員이 住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의의 의사를 都市計劃 입안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都市計劃이 진실된 住民의 의사에 반하는 마땅한 都市計劃이 입안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議員들은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 그 내용 율타리 근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質疑는 이러한 부분이 都市計劃委員會에서 決定되었다라든가 本會議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本 議員들이 알고 진정 鍾路區 발전에 도움이 되는 都市計劃이 입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地方自治制度의 設立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自治制度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두 가지 質疑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鄭命浩議員님! 중요한 質疑 하셨습니다. 그 외에 質疑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議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在岩議員 羅在岩입니다. 都市建設委員會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올린 걸로 압니다마는 조금 전에 同僚 議員이신 鄭議員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사안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地方議員이 바로 이런 점에서 앞장서서 鍾路發展을 위해서 종로 건축 일부가 됩시다마는 중요한 문제를 민간인 차원에서 15인이 끼였고 우리 議員은 두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可決한 것에 대하여 本 議員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에 대한 다시 보충이 없는지 하는 문제와 이 民間人 委囑에 대한 위원자격을 어디에다 根據를 두고 있는지 質疑를 드립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또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質疑를 終結하고 지금 현재 답변에 있어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議員들이 專門으로 잘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擔當하고 계시는 都市整備局長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都市整備局長 金洪起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鄭命浩議員님에 대한 답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都市計劃委員會는 각 區廳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都市計劃委員會로 하나의 議決機關입니다.

과거에 있던 都市整備委員會는 諮問機關이었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관이 되고 그 뒤에 보면 區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都市計劃委員會에 대하여 業務으로 參考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都市計劃委員會에 대한 權限은 의결기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이것을 都市計劃審議를 거쳐서 區議會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規定상으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都市

計劃委員會에서 일단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終結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區에 대한 都市基本計劃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檢討를 하고 있는데 지난 '92年 末에 議員 여러분에 대한 자문을 한 분 한분 勇역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檢討를 해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그 후에 저도 確認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여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 業務執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일단 다 본 뒤였습니다. 일단 議員들께서 提出하신 住民에 대한 民願事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都市基本計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計劃에 맞춰야지 민원을 100% 받아들이는 그런 條件으로 計劃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議員 22분께서 한분 한분 勇역회사와 檢討해서 민원사항을 提出하셨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과거 받아놓은 민원을 하나하나 分析해서 일단은 제시를 했습시다라는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대한 都市計劃에 따라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決定이 되면 다시 區議員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羅在岩議員님의 質疑에 대해서는 17명 중에서 區民을 대표하는 區議員이 두 명만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都市計劃委員會에 대한 議決關係는 하나의 집행기관에서 決定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都市計劃法이나 都市計劃法施行令에 規定을 그렇게 만들어 놔기 때문에 부득이 區議員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가 계시면 좋을텐데 規定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한 都市計劃委員會에 대한 자격은 이것도 역시 都市計劃法이나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委員長은 區廳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副區廳長이 되고 또 都市

整備局長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區議員과 公務員이 합해서 3분의 1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名입니다.

그래서 아까 都市建設委員會에서 설명드린 대로 建設局長을 여기에 委員으로 委囑하도록 당초에는 計劃을 세웠던 것을 한 분이 라도 더 區議員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建設局長을 빼고 委員會에 업서버로 참여하도록 規定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도 公務員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社會人으로 都市計劃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大學敎授나 전문지식을 가진 勇역회사든지 사제의 권위자를 委員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答辯이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鄭命浩議員과 羅在岩議員께서는 補充 質疑있으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議員! 質疑하십시오.

○鄭命浩議員 都市整備局長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하신 내용도 본 議員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아까 都市計劃委員會에서 議決된 안이라 하더라도 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또 地方自治制度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결된 안이라 하더라도 의회 기능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도 議會에서 확정된 안을 審議 承認을 받아서 모든 計劃을 樹立하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에 없으면, 지금 현재 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입니다.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規定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지금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施行令 準則 이런 장애때문에 제대로 地方自治制度를 살릴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절차를 둬으로써 진정한 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地方自治制度가 정착 실현될 줄로 생각되기 때문에 議會 기능 격상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制度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規定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規定하고 있는 것인지 施行令에 있든지 憲法에 있는지 法規 規定에 있는 것인지 또 地方自治

法規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방금 그런 規定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상위법에 審議 承認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같은 地方自治를 實施하고 있는 서울시議會에서는 都市計劃委員會에서 議決된 案을 議會에다 회부를 해서 심의하고 承認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사료되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質疑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하셨습니다.

(「議長!」하는 이 있음)

예, 羅在岩議員! 質疑하십시오.

○羅在岩議員 잘 들었습니다. 鄭議員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두는 빼고 자격 문제 물론 당연직, 委員長, 副委員長, 公務員, 區議員 이렇게 해서 당연직을 차지하더라도 사회인 이것을 선별할 때 확정하기 전에 심의 절차를 議會의 확인 후에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議長 李斗鶴 局長님! 나오셔서 補充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都市整備局長 金洪起입니다.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區議會에 심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 區廳에 제일 많습니까는 형질변경관계입니다.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씩 審議를 하는데 그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 한 주일, 한 달 이내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區議會에 上程을 해서 심의를 거치려고 하면 민원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肯定的으로 檢討해서 決定한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規定이 있다면 민원인에게 답변의 요지가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다시 제가 區議會에다 上程해서 審議를 거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檢討해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羅在岩議員께서 질의하신 자격관계는 여기에 어떤 결정이 자격에 대해서 大學을 나왔든지 대학원을 나왔든지 이런 細部的인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都市計劃에 대한 사제 권위자 또는 大學教授로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細部 規定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運營하고 있는 都市整備委員會의 委員은 주로 大學教授나 사제 권위자로 되어 있습니다. 土木分野는 土木에 대하여 시공관계에 대한 專門家 그렇지 않으면 구조에 대한 專門家, 建築 같은 건축에 대하여, 美術分野 이런 쪽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한 분씩 選擇해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委員會를 상정해서 사실 區議會 審議를 받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좋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區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檢討를 해보겠습니다.

(○田永泰議員 議席에서 - 서울시는.....)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서울시에도 역시 委員을 위촉하는 것은 機關長에 대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田永泰議員 議席에서 - 서울시에는 아까 計劃案을 심의된 것을 서울시議會에 다시 上程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위법이 있습니까?)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그것은 條例상에 있습니다. 우리도 條例를 제정하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執行機關에서는 하부기관에서 민원이 한건한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시 區議會에 上程을 해서 審議를 받는다면 민원인에게 주는 피해는 훨씬 클 겁니다. 어느 쪽이 더 公益性이 큰지 한번 檢討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田永泰議員 議席에서 - 會議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된다.....)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公益性에 더 이익이 된다면 가능합니다마는 그 경미한 사항을 그때마다 區議會에서 審議한다면 만약에 3개월, 4개월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



습니다.

(○田永泰議員 議席에서 - 알았습니다. 우리가 條例를 하고 안 하고는 檢討를 ……)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알았습니다.

○議長 李斗鶴 追加 質疑하실 議員계십니까?

(「議長!」하는 이 있음)

예, 鄭命浩議員! 追加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質疑 끝났으니까 충분히 하세요.

○鄭命浩議員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新築이나 増築 改築같은 허가사항이나 또 작은 都市計劃이 이미 그려진 집행할 수 있는 事業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일은 委員會의 議決로 확정되었지만 都市基本計劃같은 전체 計劃을 골격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일은 틀림없이 議會의 기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議會 審議 承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본 議員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都市整備局長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委員會의 議決로 확정될 수 있는 사항과 방금 본 議員이 質疑한 근본적인 鍾路區의 基本計劃에 어떤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만큼은 議會 審議 承認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본인의 의사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斗鶴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局長님께서 앞으로 단 시일 내에 研究를 하시겠다는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都市基本計劃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都市整備局長 金洪起 都市整備局長 金洪起입니다.

오늘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都市計劃委員會에 대한 委員 설정에 대한 條例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부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條例로 追加할 수 있는지 條例를 改正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李斗鶴 이상으로 質疑하신 두 분의 議員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불만족스럽

지만 추후에 議員들의 의견도 종합을 하고 關係部署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 質疑하실 議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質疑가 없으면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討論하겠습니다. 討論하실 議員님 계시면 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討論이 없으면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表決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은 都市建設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4.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 提議)

(15時50分)

○議長 李斗鶴 議事日程 第4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번에도 洞 순위에 따라 世宗路洞 鄭鍾九議員과 嘉會洞 李炯述議員을 署名議員으로 選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異議가 없으면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案件 처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년초인데도 많은 議員들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臨時會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초에 議員님들이 公私에 대단히 바쁘시고 앞으로 우리들이 새해와 더불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地域에서 생업에 從事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부여된 業務 遂行에 동의와 더불어 참담게 새해와 더불어 더욱더 우리 地域 發展에 기여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수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閉會말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第23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를 宣布합니다.

(15時52分 閉會)

○出席議員 19名

|     |     |     |
|-----|-----|-----|
| 李斗鶴 | 李憲九 | 鄭命浩 |
| 千相旭 | 玄壽漢 | 沈載得 |
| 李萬魯 | 鄭鍾九 | 洪承台 |
| 羅在岩 | 丁昌熙 | 陳琦植 |
| 芮相浩 | 朴勸先 | 林臥龍 |
| 田永泰 | 金憲中 | 孫光一 |
| 金成贊 |     |     |

○關係公務員

|        |     |
|--------|-----|
| 總務局長   | 周和鍾 |
| 都市整備局長 | 金洪起 |
| 保健所長   | 趙轍行 |